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분야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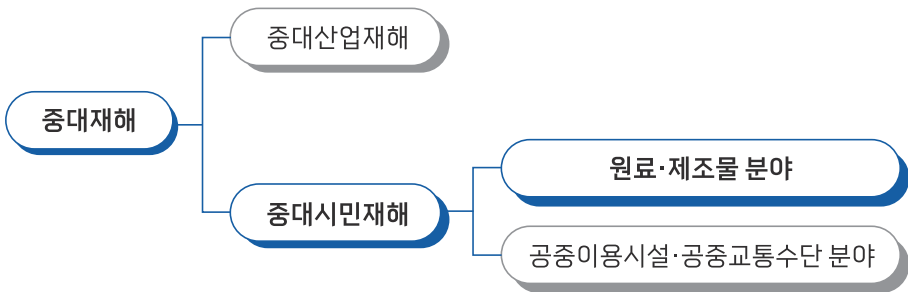
환경부

0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법 제1조)

-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2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법 제2조제1호).



제1장 총 칙	제1조 ~ 제2조	• 목적,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 ~ 제8조	• 적용범위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처벌, 양벌규정 및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 ~ 제1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처벌 및 양벌규정
제4장 보 칙	제12조 ~ 제16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및 손해배상의 책임 •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본 리플렛은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3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3호).

“

- ▶ (사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부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 (질병)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04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 ^가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나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라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 제9조).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

”

다.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의 정의

✓ 원료

≫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6호).

✓ 원료·제조물의 적용범위

≫ 원료·제조물이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을 말합니다(법 제9조제1항).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은 원료 및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재난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태풍, 강풍, 낙뢰, 지진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라.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의 정의

✓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나목).

✔ 제조상의 결함

-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가목).

✔ 관리상의 결함

- ≫ 관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을 의미합니다.
*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 그러므로 “관리상의 결함”이란 원료·제조물의 유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해당 원료·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론적 시설 관리상 결함에 대한 판례는 “해당 시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부 적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영조물 책임에서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05 중대산업재해의 제외

-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3호).
-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시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2명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9명이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 2명**

[*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2명 이상) 및 1년 이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자(3명 이상)]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1명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10명이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10명**

[*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10명 이상) 및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10명 이상)]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2명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10명이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 2명, 중대시민재해 10명**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검사의 판단 상황으로 각각 또는 병합하여 처벌할 수 있음



06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법 부칙 제1조제1항)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제1조제1항 본문).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 [주의]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사용 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에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0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

- ▶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
-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등



①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영 제8조제1호 및 제5호)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1호가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법 제9조제4호 및 영 제9조제1항).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1호나목).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1호다목).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환경부고시)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2.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 체계 운영,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3. 원료·제조물의 보관·유통 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4.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
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라)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5호).

②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영 제8조제2호 및 제5호)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2호가목).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2호나목).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2호다목).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환경부고시)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3.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라)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영 제8조제5호).

③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영 제8조제3호 및 별표 5)

가)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 (영 별표 5)

원료 또는 제조물	관계 법령	원료 또는 제조물	관계 법령
독성가스	「고압가스법」	의약품, 의약품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품외품	「약사법」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농약관리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마약류	「마약류관리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비료관리법」	화약류	「총포화약법」
살생동물질 및 살생물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	

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이 제외(면제)됩니다(영 제8조제4호).

- (1)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2)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3)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4)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영 제13조)

위 '가'의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은 각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에 해당할 것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2호)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계획서 구성

- ① 사고 개요 ② 조사 내용 ③ 사고 원인 분석 및 결론 ④ 재발방지 대책 ⑤ 향후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9조제1항제3호)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시>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① 명령 사항 확인 ②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③ 이행조치 실시 ④ 재발방지 대책 ⑤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9조)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영 제9조제2항제1호).



가)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
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②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영 제9조제2항제2호).
-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영 제9조제2항제3호).
- ④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영 제9조제2항제3호).
- ⑤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영 제9조제2항제4호).

※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영 제13조)

위 '가'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위 '가'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위 '가'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08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 ☑ 법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0조).
-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합니다(법 제11조).

구 분	처 벌	양 벌 
사 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 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질 병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9조)를 이행하고, 그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 및 보관(영 제13조)하는 등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히 보러가기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분야



환경부